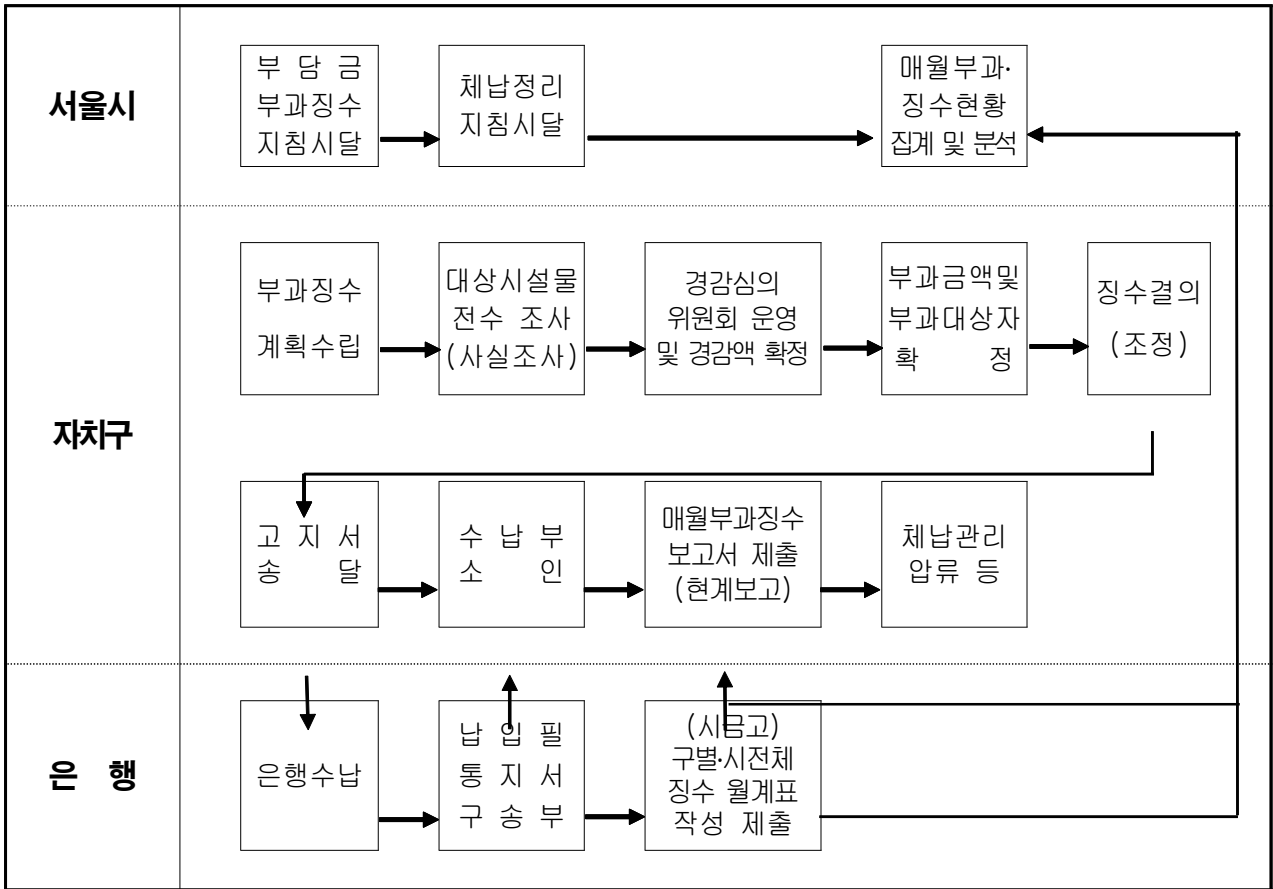


붙임 1

1.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 업무처리 흐름도



1단계
부과대상 시설물 처리, 부담금 계산
부과대상 시설물, 소유자, 총별 이용정보, 감면 등을 등록하고, 부담금계산 (부과기준일 : 매년 7.31)

⇒

2단계
교통유발부담금 부과, 변경처리
소유자별로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, 미사용정보, 소유자 변동,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처리

⇒

3단계
고지처리, 분납처리
·부과정보, 납부기한을 정하여 각 소유자에게 고지, 분납 요청시 분납 고지 (납부기간 : 10.16 ~ 10.31)

4단계
부담금 징수, 환급처리
납부기한 내에 고지금액을 징수하고, 과소과다 징수된 액은 차액을 추징 또는 환급

⇒

5단계
채납처리
·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부과 ·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내 독촉장 발부

⇒

6단계
재산압류, 해제 처리
·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조건 발생 ·납부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게 된 때 압류해제 및 통지